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677호 2026. 7. 10.(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9

고 시

- 2026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43

공 고

- 임대주택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2026년 2분기 공고 45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물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46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58
- 공유수면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68

안

-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정기)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동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동구소식 → 고시/공고 → 동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 동구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715호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동구파크골프장 구성에 따른 운영 기준 마련
- 국가권익위 및 국가보훈부의 조례 개정 요구 사항 등 반영

2. 주요내용

- 동구파크골프장 휴무일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3호, 안 별표 1)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5조제3항 및 4항, 제16조제1항)
-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추가(안 별표 2)

3. 근거법률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및 제156조(사용료 징수조례 등)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4. 개정 조례안 및 신규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7월 30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문화체육과
- 2) 팩스번호: 052-209-3337
- 3) 전자우편: hana0506h@korea.kr

6.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문화체육과(전화: 052-209-3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조례안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1】**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동구국민체육센터·꽃바위체육센터·동부체육센터”를 “동구국민체육센터·꽃바위체육센터·동부체육센터·동구파크골프장”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 기간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을 “사용기간 중 별도의 필요한 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동구국민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수 영	1회 사용			어린이	2,000	
				청소년		
				성 인	2,500	
	월	사용		어린이	35,000	
				청소년	40,000	
				성 인	45,000	
		강습	주 4회	어린이	45,000	· 1시간
				청소년	50,000	
				성 인	55,000	
아쿠아로빅	월	강습	주 4회	성 인	55,000	
헬 스	월	사용		청소년	45,000	
				성 인		

○ 화정체육관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탁 구 배드민턴	1회 사용			어린이	2,500	· 강습시간 외 사용	· 기본 3시간
				청소년			
				성 인	3,000		
	월	사용		전 체	30,000		
		강습	주 2회		30,000	· 1시간	
			주 3회		40,000		
음악줄넘기	월	강습	주 1회	어린이	30,000	· 매주 토요일 · 1시간	
농 구 축 구				청소년	35,000		
체육관 (2층)	대 관			전 체	35,000	·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전하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대왕암홀	대관	체육경기		전 체	60,000	·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일반대관			90,000			
생활체조	월	강습	주 2회	전 체	20,000	· 1시간		
			주 3회		30,000			
	대관		30,000		·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스피닝	월	강습	주 2회	전 체	33,000	· 1시간		
			주 3회		50,000			
탁 구	월	사용		전 체	55,000		· 기본 3시간 · 대관 중에는 사용할 수 없음	
배드민턴					50,000			
스쿼시					55,000			
탁 구		강습	주 4회		70,000	· 1시간		
배드민턴					60,000			
스쿼시					70,000			
탁구 배드민턴	1회 사용		어린이	2,500				
			청소년					
			성 인	3,000				
			스쿼시	전 체				4,500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2,000	· 1시간 기준 · 놀이시설 입장 기준 신장 130cm 이하		

○ 꽃바위 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클라이밍	1회 사용			어린이	2,000	· 1시간	· 기본 2시간
				청소년			
				성 인	3,000		
	월	사용		전 체	30,000		
		강습	주 2회		40,000		
탁 구	1회 사용			어린이	2,500	· 1시간	· 기본 2시간
				청소년			
				성 인	3,000		
	월	사용		전 체	25,000		
		강습	주 2회		30,000		

○ 동부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수 영	1회 사용			어린이	5,000		
				청소년			
				성 인	6,000		
	월	사용		어린이	45,000		
				청소년	50,000		
				성 인	55,000		
		강습	주 4회	어린이	55,000	· 1시간	
				청소년	60,000		
				성 인	65,000		
아쿠아로빅	월	강습	주 4회	전 체	65,000		
생활체조	월	강습	주 2회		20,000		· 1시간
			주 3회		30,000		
	대관			전 체	30,000	·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동구파크골프장

(단위: 원)

구 분	동구민	관외자	비 고
일일 사용료	3,000	5,000	· 18홀 기준(3시간)
대관료	400,000		· 18홀 기준(1일)
※ “동구민”이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풋살장(히딩크 드림필드, 일산천 청소년 문화거리 체육시설)

구 분	사용료(원)		사 용 자 격	기 타
	평일	토·일· 공휴일		
일반인 (1시간)	20,000	25,000	- 히딩크 드림필드장에 한하여 장애인 우선 이용 8명 이상 사용 가능	- 일반인이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5,000원을 가산 - 일반인이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히딩크 드림필드장은 장애인 무료
장애인	무료	무료		

○ 동구야구경기장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평일	토·일· 공휴일	
1시간	35,000	45,000	- 울산광역시민이 아닌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10,000원을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 동구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할인 (동구민이 9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5일 이상 전지훈련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 - 조명 사용 시 시간당 25,000원을 가산

○ 화정체육관, 동구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꽃바위체육센터 및 동부체육센터 사용 시 공통 적용 사항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삼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월 사용이란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월 사용자는 1일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5. 시중 요금 등을 고려한 사용료는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부대비용

구분		기준	사용료
냉·난방시설		시간당	· 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음향설비		1일 1회	30,000원
집기	집기사용	-	· 탁자: 개당 3,000원 · 의자: 개당 500원 ※ 체육경기 시 면제
수도료	샤워장	-	· 샤워 시 1회 사용료 적용 (어린이·청소년 요금 적용)
관리비	정비 및 청소	1회	50,000원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3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면제
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을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면제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동구체육회가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100분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사람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및제5호에 따른 사람	100분의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0분의 50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3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100분의 30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단체 입장(20명 이상) 시	100분의 20
가임기 여성 수영 회원	100분의 1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휴무일)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일 개방해야 한다. 1. · 2. (생 략) 3. <u>동구국민체육센터 · 꽃바위체육센터 · 동부체육센터</u> 의 경우 매주 월요일 4. ~ 7. (생 략)	제10조(휴무일) ----- ----- -----. 1. · 2. (현행과 같음) 3. <u>동구국민체육센터 · 꽃바위체육센터 · 동부체육센터 · 동구파크골프장</u> ----- 4.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② 삭 제 <u>〈신 설〉</u> <u>〈신 설〉</u>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u> ④ <u>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u>
제16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u>사용 기간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u>	제16조(부대설비 설치) ① ----- <u>사용기간 중 별도의 필요한 설비를</u> ----- ----- . <u>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u>

② (생 략)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풋살경기장

구 분	사용료(원)		이용 자격	기 타
	평일	토·일·공휴일		
일반인(1시간)	20,000	25,000	허당크 드림필드장만 장애인우선 이용 8명이상 이용	일반인 조영 사용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일반인 초과 사용 시 시간당 50% 가산 허당크 드림필드장만 장애인 무료
장애인(1시간 또는 1일)	무료	무료		

○ 야구경기장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1시간	35,000	45,000	울산광역시민 외 20%가산 1시간 초과 시 10,000원 가산 1시간 미만 1시간 적용 동구민은 20%할인 5월 이상 전지훈련 시 50%할인 조명사용 시 시간당 25,000원 추가

○ 화정체육관

구 분	대 상	사 용 료(원)	비 고
1회 사용	어린이		
	청소년	2,000	기준 : 1시간
	성 인	2,500	강습시간의 적용
월 사용 (강습포함)	어린이		
	청소년	주2회 : 30,000	
	성 인	주3회 : 40,000	
대관료	어린이		
	청소년	35,000	기준 : 1시간 냉·난방 사용 시 시간당 50%가산
	성 인		초과 사용 시 시간당 50% 가산

○ 동구국민체육센터

종 목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대 상	요 금	
수영장	1회 사용	어린이	2,000	
		청소년	2,500	
		성 인	2,500	
	월 사용 (강습)	어린이	35,000 (45,000)	
		청소년	40,000 (50,000)	
		성 인	45,000 (55,000)	
헬스장	월 사용	청소년	45,000	
헬스장	월 사용	성 인	65,000	
수영장	수영 강습	성 인	(75,000)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동구국민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수 영 장	1회 사용	어린이	2,000	
		청소년	2,500	
		성 인	2,500	
	월 사용	어린이	35,000	
		청소년	40,000	
		성 인	45,000	
	강습	어린이	45,000	
		청소년	50,000	
		성 인	55,000	
	마루아로빅	월 강습	주 4회	성 인 55,000
헬 스	월 사용	청소년	45,000	
		성 인	45,000	

○ 화정체육관

구 분	대 상	사용료(원)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학 구 배드민턴	1회 사용	어린이	2,500	
		청소년	3,000	
		성 인	3,000	
	월 사용	어린이	30,000	
		청소년	30,000	
		성 인	40,000	
음악강습	월 강습	주 2회	30,000	
	월 강습	주 3회	40,000	
농 구 족 구	월 강습	주 1회	어린이 30,000 청소년 35,000	
		성 인	35,000	
체육관 (2층)	대 관	월 세	35,000	

○ 전하체육센터

종 목	구 분	대 상	사 용 료(원)	비 고
대형악동	대관1시간	체육경기	60,000	초과 사용 시 시간당 50% 가산
		체육경기외	90,000	
생활체육	주3회 강습 주2회 강습	전체	사중요금의 70%이하	초과 사용 시 시간당 50% 가산
			30,000	
스피닝	주3회 강습	전체	사중요금의 70%이하	초과 사용 시 시간당 50% 가산
탁구장	월 사용	전체	사중요금의 70%이하	(도공특정 무료사용 가맹단 대관 시 사용 불가) 초과 사용 시 시간당 50% 가산
배드민턴장	월 사용	전체	사중요금의 70%이하	
스쿼시장	월 사용	전체	사중요금의 70%이하	초과 사용 시 시간당 50% 가산
1회 사용	탁구 배드민턴	어린이 청소년	사중요금의 70%이하	
		성인	사중요금의 70%이하	초과 사용 시 시간당 50% 가산
	스쿼시	전체	사중요금의 70%이하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사중요금의 70%이하	초과 사용 시 시간당 50% 가산

○ 꽃바위 체육센터

종 목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연공합계	1회 사용	대 상	요 금
		어린이	
		청소년	
		성 인	
		전 체	
탁구장	1회 사용	어린이	요 금
		청소년	
		성 인	
		전 체	
		전 체	

○ 동부체육센터

종 목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수영장	1회 사용	대 상	요 금
		어린이	
		청소년	
		성 인	
		전 체	
생활체육	주3회 강습 주2회 강습 대관(1시간)	어린이	요 금
		청소년	
		성 인	
		전 체	
		전 체	

○ 화정체육관, 동구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꽃바위체육센터 및 동부체육센터
사용 시 공통 적용 사항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교
2.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고등학교
3. 월 사용은 1개월을 사용하는 자를 말함
4. 월 사용자는 1일 한 차례만 사용 가능함(중복 사용자는 1일 두 차례까지 가능)
5. <사례>
6. 사용요금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구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부대비용

구분	기준	사용료(원)
냉,난방시설	시간당	기본료의 50%
음향설비		30,000원
점기	점기사용	· 탁자 개당 : 3,000원 · 의자 개당 : 500원 · 체육경기 시는 면제
수도료	사위장	· 사위 시 1회 사용료 납부 (어린이, 청소년 요금)
관리비	정비 및 청소	50,000원

○ 전하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 용 료(원)	비 고
대형악동	대관	체육경기	60,000
		일반대관	90,000
생활체육	월	강습 주 2회	20,000
		강습 주 3회	30,000
스피닝	월	강습 주 2회	33,000
		강습 주 3회	50,000
탁 구	월	사용	55,000
배드민턴			50,000
스쿼시			55,000
탁 구			70,000
배드민턴			60,000
스쿼시			70,000
탁구	배드민턴	어린이	2,500
		청소년	3,000
		성 인	4,500
스쿼시	월	강습 주 2회	30,000
		강습 주 3회	40,000
어린이 놀이시설	월	강습 주 2회	20,000
		강습 주 3회	30,000

○ 꽃바위 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 용 료(원)	비 고
클라이밍	1회 사용	어린이	요 금
		청소년	
		성 인	
		전 체	
		전 체	
탁 구	월	사용	요 금

○ 동부체육센터

구 분	대 상	사 용 료(원)	비 고
수 영 장	1회 사용	어린이	요 금
		청소년	
		성 인	
		전 체	
		전 체	
생활체육	월	강습 주 2회	요 금

○ 화정체육관, 동구국민체육센터, 전라체육센터, 꽃바위체육센터 및 동부체육센터
사용 시 공통 적용 사항

1. 어린이단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월 사용이란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월 사용자는 1월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5. 시중 요금 등을 고려한 사용료는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부대비용

구분	기준	사용료
냉·난방시설	시간당	· 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승강장비	1일 1회	30,000원
집기	집기사용	· 탁자: 개당 3,000원 · 의자: 개당 500원 ※ 체육경기 시 면제
수도로	사위장	· 사위 시 1회 사용료 적용 (어린이·청소년 요금 적용)
관리비	정비 및 청소	1회 50,000원

○ 동구파크골프장

(단위: 원)

구분	동구연	관외자	비고
일일 사용료	3,000	5,000	· 18홀 기준(3시간)
대관료	400,000		· 18홀 기준(1일)

※ “동구연”이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읍면동별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풋살장(허딩크 드림필드, 일산천 청소년 문화거리 체육시설)

구분	사용료(원)		사 용 자 격	기 타
	평일	토·일·공휴일		
일반인 (1시간)	20,000	25,000	· 허딩크 드림필드장에 한하여 장애인 우선 이용 · 8명 이상 사용 가능	· 일반인이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5,000원을 가산 · 일반인이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허딩크 드림필드장은 장애인 무료
장애인	무료	무료		

○ 동구야구경기장

구분	사용료(원)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1시간	35,000	45,000	· 읍면동별주민이 아닌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10,000원을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 동구연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할인 (동구연이 9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5일 이상 전지훈련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 · 초별 사용 시 시간당 25,000원을 가산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3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대상	감면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면제
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히딩크 드림월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면제	히딩크 드림월드 풋살경기장을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면제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동구체육회가 주최하는 행사	100분의 50	동구체육회가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보는 사람 1명 포함)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100분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사람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및제5호에 따른 사람	100분의 5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100분의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0분의 50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100분의 20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분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30
수영회원 중 가입기 여성	100분의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100분의 30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단체 입장(20명 이상) 시	100분의 20
		가입기 여성 수영 회원	100분의 10

【붙임 2】

근 거 법 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존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②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예우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제13조 관련)

I. 비용발생 요인: 파크골프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II. 비용추계의 전제

- 동구민 3,000원, 관외 5,000원
- 연간 운영 일수 220일 산정 ※ 대관일 포함
 - 3월~4월 정비기간 50일, 기상악화 35일, 정기휴일 등 60일 제외
- 2부제 기준 1부당 72명 산정(연간 28,800명)
- 동구민과 관외자 비율: 8:2(동구민 23,040명, 관외자 5,760명)
- 전체 이용객 중 일부 이용객(20%)에 대해 감면 혜택(50%) 적용
- 5년간 평균 최저시급 인상률(3.44%), 물가상승률(3.12%), 전기요금상승률(11.54%) 반영

III.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2026 (10월~12월)	2027	2028	2029	2030
총비용(A-B)		114,543	70,391	5,014	8,906	12,981	17,251
재정	소계(A)	509,272	93,423	97,403	101,610	106,060	110,776
지출	운영비	509,272	93,423	97,403	101,610	106,060	110,776
재정	소계(B)	391,544	23,032	92,128	92,128	92,128	92,128
수입	사용료	391,544	23,032	92,128	92,128	92,128	92,128

IV. 재정지출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509,272	93,423	97,403	101,610	106,060	110,776
구비		509,272	93,423	97,403	101,610	106,060	110,776

V. 기타사항

1. 부대의견: 없음
2. 협의사항: 없음
3. 작성자: 문화체육과 지방시설주사보 김범균(☎209-3334)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제15조 관련)

1.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합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509,272	93,423	97,403	101,610	106,060	110,776
구비	일반회계	509,272	93,423	97,403	101,610	106,060	110,776

2. 재원조달방안: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 부 서: 문화체육과
-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김범균(☎209-3334)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717호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미반영된 체육시설 현황 및 사용시간을 정비하여 이용 편의성과 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서식 내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의 불일치를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 및 미반영 체육시설 명칭과 소재지 추가 등(안 별표 1)
- 신규 및 미반영 체육시설 사용시간 추가(안 제4조)
 -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표 삭제 및 별표 신설(안 별표 2)
- 법령 간 통일성 및 적정성 확보(안 별지 제1호 ~ 제6호 서식)

3. 근거법률

-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시간)

-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 허가), 제6조(사용취소신청), 제7조(부대설비 승인 신청), 제9조(위탁운영 신청 및 수탁자의 선정), 제12조(위탁기간의 연장)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4. 개정 규칙안 및 신규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7월 30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문화체육과
- 2) 팩스번호: 052-209-3337
- 3) 전자우편: hana0506h@korea.kr

6.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문화체육과(전화: 052-209-3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문조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1】**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조례 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고
동구국민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3(화정동)	수영장, 헬스장, 조깅코스	
화정체육관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로 140(화정동)	체육관, 샤워실, 무대, 관람석	
전하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85(전하동)	대왕암홀, 탁구장, 스쿼시장, 생활체육조실, 샤워실, 어린이놀이시설	
꽃바위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2가길 19(방어동)	클라이밍장, 탁구장,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돌고래 역도단 훈련장	
동부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46(동부동)	수영장, 샤워실, 체온관리실, 생활체육조실	
동구파크골프장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99-15번지 일원	파크골프장(18홀), 화장실	
히딩크 드림필드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79(전하동)	풋살경기장, 관람석, 족구장, 샤워장, 화장실	
일산천 청소년 문화거리 체육시설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43번지 일원	풋살경기장, 농구장	
동구야구경기장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산업로 145(미포동)	야구경기장, 야구용품보관장소, 휴게시설, 화장실, 선수대기실	

[별표 2]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조례 제9조 관련)

명 칭	사 용 시 간	비 고
동구국민체육센터	· 평일 06:00~22: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6:00~19:00	
화정체육관	· 평일 09:00~22: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전하체육센터	· 평일 09:00~22: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꽃바위체육센터	· 평일 09:00~21: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동부체육센터	· 평일 06:00~22: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6:00~19:00	
동구파크골프장	· 평일 09:00~18: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 하절기 및 동절기 사용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히딩크 드림필드	· 하절기(4월~10월) 06:00~22:00 · 동절기(11월~3월) 07:00~22:00	
일산천 청소년 문화거리 체육시설 풋살경기장		
동구야구경기장	· 하절기(4월~10월) 06:00~23:00 · 동절기(11월~3월) 09:00~23:00	

[별지 제1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인	단체(법인)명		연락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용 시설	시설명				
	부대시설	☐ 음향시설() ☐ 냉·난방시설() ☐ 조명() ☐ 체육용품() ☐ 기타시설()			
체육 경기(행사)명			사용 인원	명	
사용 기간	당초	년 월 일 : ~ 월 일 : .(일 시간)			
	변경	년 월 일 : ~ 월 일 : .(일 시간)			
	변경사유				
사 용 료	산출내역	☐ 기본료() ☐ 부대시설 사용료(()			
	총계				
감면여부		☐ 해당 ☐ 비해당		감면사유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신청자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업무 처리 완료 시까지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				
신	주 소			
청	단체(법인)명	(연락처 :)		
인	성명(대표자)			
체육경기(행사)명			참가인원	
사용	시 설 명			
시설	부대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 : ~ 월 일 : .(일 시간)		
사 용 료	구 분	금 액(원)	산출근거	
	총 계			
	기본사용료			
	부대시설료			
	기 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인)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해야 한다.
2.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사용자가 변상한다.
3.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4.	행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종료 즉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사업장용)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처리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5.	허가기간 중이라도 국가, 자치단체행사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허가 취소 시 사용료는 전액 반환)
6.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7.	허가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주 소			
	단체(법인)명		연 락 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용허가 내 용	시설명		허가번호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료		수 납 일	년 월 일
취소사유				
반환금 산출내역			반환금액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 업무 처리 완료 시까지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체육시설 부대설비 설치 승인신청서					
당 초 허가번호		접수번호		일 자	년 월 일
사 용 자	주 소				
	단체(법인)명		연 락 처		
	성명(대표자)				
사용일시		년 월 일 : ~ (시간)			
		년 월 일 : ~ (시간)			
부대설비 설비 신청내용	설치시기				
	설치사유				
	구체적 내역 (도면첨부)				
사 용 료					
※ 아래의 승인조건을 읽으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승 인 조 건					
1.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설비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2. 체육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비 설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체육시설 부대설비 설치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체육시설 부대설비 설치 승인신청 및 신청자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단체명(법인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체육시설 부대설비 설치 승인신청 업무 처리 완료 시까지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부대설비 설치 승인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법인(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구청장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른다.) 1부 2. 단체 또는 개인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단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단체 및 개인)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위탁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위탁 신청 및 신청자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위탁 신청 업무 처리 완료 시까지
-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위탁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법인(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간		당초		연장	
사유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구청장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른다.) 1부 2. 단체 또는 개인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단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단체 및 개인)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위탁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위탁 기간 연장 신청 및 신청자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위탁 기간 연장 신청 업무 처리 완료 시까지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관리 · 운영 위탁 기간 연장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사용시간)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과 같다.

시설명	이용시간	비고
대구광역시체육센터	평일 08:00~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08:00~18:00	
북구체육관	평일 08:00~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08:00~18:00	
전북체육센터	평일 08:00~22:00, 토요일~공휴일 08:00~18:00	
충청경기장	하절기(4월~10월) 08:00~22:00 동절기(11월~3월) 07:00~22:00	
대구경기장	하절기(4월~10월) 08:00~22:00 동절기(11월~3월) 08:00~22:00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조례 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 시설	비고
대구광역시체육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229(동대동)	수영장, 헬스장, 조정코스, 레크리에이션	
북구체육관	대구광역시 남구 북구동 342(북구동)	체육관, 사격장, 탁구장, 무도, 권투장	
전북체육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288(동대동)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스쿼터장, 생활체육교실,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충청경기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288(동대동)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440(동대동)	수영장, 사격장, 조정코스,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교실,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대구경기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342(동대동)	수영장,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교실,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신 설>

제4조(사용시간)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명칭	소재지	주요 시설	비고
대구광역시체육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229(동대동)	수영장, 헬스장, 조정코스	
북구체육관	대구광역시 남구 북구동 342(북구동)	체육관, 사격장, 무도, 권투장	
전북체육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288(동대동)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스쿼터장, 생활체육교실,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충청경기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288(동대동)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440(동대동)	수영장, 사격장, 조정코스,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교실,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대구경기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342(동대동)	수영장,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교실,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대구광역시체육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229(동대동)	수영장, 헬스장, 조정코스	
북구체육관	대구광역시 남구 북구동 342(북구동)	체육관, 사격장, 무도, 권투장	
전북체육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288(동대동)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스쿼터장, 생활체육교실,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충청경기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288(동대동)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440(동대동)	수영장, 사격장, 조정코스,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교실,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대구경기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동 342(동대동)	수영장,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교실, 사격장, 레크리에이션	

[별표 2]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조례 제9조 관련)

행명	시료시간	비고
동구국민체육센터	월요일 09:00~21:00 화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도정체육관	월요일 09:00~21:00 화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전북체육센터	월요일 09:00~21:00 화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광주체육체육센터	월요일 09:00~21:00 화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동주체육센터	월요일 09:00~21:00 화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충남체육문화센터	월요일 09:00~21:00 화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충남경기장	화요일(24일~26일) 09:00~21:00 충남경기장(27일) 09:00~21:00	
이수경기장	화요일(24일~26일) 09:00~21:00 충남경기장(27일) 09:00~21:00	

[별지 제1호 서식]

[illegible]

[별지 제1호 서식]

[illegible]

[illegible][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처가주소 및 사용료 반환 설명서					
발주번호			발주일		
발주명	발주처				
	발주처명		발주처		
	발주처명		발주처명		
사용처가 명	사용처명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사용처명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사용처명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회계처분					
회계과 회계담당			회계과 회계		
본문내용에 발주처가주소를 반환하고 사용료 반환처를 기재하시라. (본문내용에 발주처와 같은 내용을 사용처가주소 및 사용료반환을 설명함+다) 발주처명 발주처명					
본문내용에 발주처명 기재					
본문내용에 발주처명 기재 본문내용에 발주처명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illegible]

69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귀하(사용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에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귀하(사용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선택)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사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처리 완료 시까지 ※ 폐지는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사용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성명:	거부 또는 철회
울산광역시 동구동읍 리북	

[별지 제5호 서식]

[illegible]

[별지 제6호 서식]

[illegible]

[별지 제6호 서식]

[illegible]

2001

●생물정보의 중요성 - 생물 정보학

1. 기업정보 수집 : 이를 통해 세제·회계·경영·금융·채무 기업 정보 수집 및 분석에 활용
2. 기업정보 수집 경로 : 정부, 민간기업, 뉴스, 인터넷
3. 기업정보의 표시 및 : 이를 기업 세제·회계·경영·금융·채무 기업 정보 수집·분석·처리
원인 : 다양한
4. 다양한 원인 : 기업정보 수집 : (1) 내부 :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있습니다. 다른, (2) 외부에서 있을 경우 세제·회계·경영·금융·채무 기업 정보 수집·분석·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 **출판권역에 접근할 수 없다**

【붙임 2】

근 거 법 규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허가) ①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 교부 시 허가 조건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6조(사용취소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설비 승인 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신청 및 수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본 규칙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사용시간을 정하는 사항으로 재정 수반이 없어 비용추계를 생략함.

3. 작성자

- 소 속 : 문화체육과
- 직 책 :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 정 하 나
- 연 락 처 : 209-3337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57호

2026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개발제한구역 제외)

(단위:원/㎡)

번 호	지 목	개별공시지가 평 균 치	번 호	지 목	개별공시지가 평 균 치
1	전	198,716	15	철도용지	-
2	답	163,157	16	제방	135,938
3	과수원	83,088	17	하천	175,859
4	목장용지	-	18	구거	116,167
5	임야	34,433	19	유지	186,290
6	광천지	-	20	양어장	-
7	염전	-	21	수도용지	112,962
8	대	1,101,335	22	공원	319,612
9	공장용지	250,774	23	체육용지	180,961
10	학교용지	745,023	24	유원지	-
11	주차장	776,910	25	종교용지	919,360
12	주유소용지	1,626,065	26	사적지	31,498
13	창고용지	447,639	27	묘지	56,894
14	도로	303,689	28	잡종지	428,926

○ 고시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자료 활용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359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2026년 2분기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2026. 4. 1.부터 2026. 6. 30.까지 우리 구에 신고 된 임대주택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임대주택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현황

연번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조건(원)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6길 3 401호	20260415	20270414	5,000,000	500,000
2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6길 3 402호	20260415	20270414	5,000,000	500,000
3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6길 3 407호	20260401	20270331	5,000,000	550,000
4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6길 3 501호	20260519	20270518	3,000,000	550,000
5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길 74-1 202실	20260110	20270109	3,000,000	410,000
6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길 74-1 204실	20251130	20261129	3,000,000	390,000
7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길 74-1 203실	20251116	20261115	3,000,000	390,000
8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길 74-1 301실	20251012	20261011	3,000,000	380,000
9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길 74-1 302실	20251010	20261009	10,000,000	670,000
10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6길 3 602호	20260531	20270530	3,000,000	550,000
11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6길 3 1107호	20260602	20270601	3,000,000	550,000
12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6길 3 1207호	20260620	20270619	5,000,000	500,000
13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6길 3 1307호	20260602	20270601	5,000,000	500,000
14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길 74-1 201실	20260410	20261009	3,000,000	460,000

연번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조건(원)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5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길 74-1 401실	20260613	20270612	10,000,000	700,000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680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물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보관중인 물품내역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내용: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 ~ 2026. 8. 1.(31일간)
3. 처분내용

위반 장소	대상 또는 종류	보관기간 및 장소	비고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55-39 일원 (서부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 보관기간: 2026. 6. 25. ~ 2026. 12. 26. · 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647 (대로콘크리트 옆 야적장)	‘26. 6. 25. 행정대집 행 시행

3. 물품내역: 붙임 참고(점용물 등의 목록)
4. 보관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647 ※붙임 참고
5. 문 의 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 052-209-3654)
6. 유의사항: 해당 물건 반환 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4(점용물 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용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에 따라 6개월 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귀속되어 폐기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위반장소	보관일시	보관장소	취급자성명	비고
1	고추지지대	1m	10개	서부동 955-39	2026. 6. 25. ~ 2027. 1. 26.	서부동 647 대로콘크리트 옆 적치장 (야적장)	동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2	플라스틱 통	흰색	1개					
3	철근	30cm	6개					
4	그물망	20m	1개					
5	원형 화분	검은색	1개					
6	빨래 걸이	은색	1개					
7	장판	2M*4M	1개					
8	요가매트	하늘색	1개					
9	쇠파이프	1m	4개					
10	고추지지대	1m	12개					
11	장화	파란색	한짝					
12	바가지	파란색	1개					
13	스티로폼	30cm* 50cm	1개					
14	신발	현대로고, 검은색	한켤레					
15	사각 화분	검은색	1개					
16	양동이	은색	1개					

257mm×364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위반장소	보관일시	보관장소	취급자성명	비고
1	밥주걱	빨간색	1개	서부동 955-39	2026. 6. 25. ~ 2027. 1. 26.	서부동 647 대로콘크리트 옆 적치장 (야적장)	동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2	가위	엄은색	1개					
3	낫	30cm	1개					
4	검은 비닐	10L	1개					
5	투명 비닐	10L	1개					
6	목장갑	흰색	두켢레					
7	로프	흰색	1개					
8	플라스틱 접시	흰색	1개					
9	행주	핑크색	1개					
10	고추지지대	1m	12개					
11	밥상	빨간색	5개					
12	뱃줄	핑크색	1개					
13	파렛트 (플라스틱)	빨간색	1개					
14	천막	초록색	2개					
15	공구함	검은색	1개					
16	고추지지대	1m	1개					

257mm×364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위반장소	보관일시	보관장소	취급자성명	비고
1	삽	파란색	1개	서부동 955-39	2026. 6. 25. ~ 2027. 1. 26.	서부동 647 대로콘크리트 옆 적치장 (야적장)	동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2	철판	1.5m*1.5m	2개					
3	미니 세숫 대야	핑크색	2개					
4	양파망	초록색	1개					
5	고추지지대	1m	5개					
6	밥그릇	은색	1개					
7	쇠 파이프	1m	7개					
8	나무 물품 보관함	30cm*40c m	1개					
9	미니 세숫 대야	파란색	1개					
10	플라스틱 의자	파란색	1개					
11	주전자 뚜껑	은색	1개					
12	빗자루	50cm	1개					
13	과도	30cm	1개					
14	식칼	40cm	1개					
15	뜯채	손잡이 빨간색	1개					
16	미니 호미	30cm	1개					

257mm×364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위반장소	보관일시	보관장소	취급자성명	비고
1	채 바구니	흰색	1개	서부동 955-39	2026. 6. 25. ~ 2027. 1. 26.	서부동 647 대로콘크리트 옆 적치장 (야적장)	동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2	줄	진한 파란 색	1개					
3	줄	연한 파란 색	1개					
4	줄	검은색	1개					
5	줄	초록색	1개					
6	파렛트 (플라스틱)	2m*1m 초록색	1개					
7	옷걸이	흰색	1개					
8	플라스틱 트레이	밝은 회색	1개					
9	쇠 파이프	1m	10개					
10	고추지지대	1m	4개					
11	원형 젓갈 통	흰색	1개					
12	지게	회색	1개					
13	철문	1m*1m	1개					
14	물뿌리개	파란색	1개					
15	미니 세숫 대야	핑크색	1개					
16	원형 젓갈 통	흰색	3개					

257mm×364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위반장소	보관일시	보관장소	취급자성명	비고
1	PE 파이프	5m	1개	서부동 955-39	2026. 6. 25. ~ 2027. 1. 26.	서부동 647 대로콘크리트 옆 적치장 (야적장)	동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2	고추지지대	1m	1개					
3	과도	핑크색	1개					
4	원형 통	흰색	1개					
5	플라스틱 덮개	하늘색	1개					
6	가위	30cm	1개					
7	원형 통 (작음)	흰색	1개					
8	그늘 천막	검은색	1개					
9	자물쇠	초록색	1개					
10	그물망	파란색 3m	1개					
11	플라스틱 대야	연한 연두 색	1개					
12	원형 통	박정희 식 품	1개					
13	스티로폼	노란색 테 이프 두름	1개					
14	체 바구니	핑크색	1개					
15	각목	하늘색	10개					
16	고추지지대	1m	15개					

257mm×364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위반장소	보관일시	보관장소	취급자성명	비고
1	그물망	2m	1개	서부동 955-39	2026. 6. 25. ~ 2027. 1. 26.	서부동 647 대로콘크리트 옆 적치장 (야적장)	동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2	비닐	검은색	2개					
3	양동이	핑크색	1개					
4	비료	20kg	6개					
5	파렛트 (플라스틱)	회색	1개					
6	물뿌리개	핑크색	2개					
7	물뿌리개	파란색	1개					
8	식 파이프	1m	10개					
9	파렛트 (플라스틱)	검은색	1개					
10	돼지 모양 플라스틱통	핑크색	1개					
11	물뿌리개	파란색	1개					
12	아이스박스 함	파란색	1개					
13	장화 한 켤 래	검은색	1개					
14	그늘막	검은색	1개					
15	철근	1m	10개					

257mm×364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위반장소	보관일시	보관장소	취급자성명	비고
1	플라스틱 원형통	흰색	1개	서부동 955-39	2026. 6. 25. ~ 2027. 1. 26.	서부동 647 대로콘크리트 옆 적치장 (야적장)	동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2	주전자	흰색 과일 무늬	1개					
3	냄비	은색	1개					
4	물뿌리개	파란색	1개					
5	고추지지대	1m	6개					
6	밧줄	흰색 6m	1개					
7	밧줄	파란색 2m	1개					
8	플라스틱 의자	검은색	1개					
9	물뿌리개	파란색	1개					
10	농사용 비 닐 롤	검은색	2개					
11	흙 레기	주황색	1개					
12	접의식 의자	검은색	1개					
13	물뿌리개	하늘색	1개					
14	아이스박스	노란색	1개					
15	미니바가지	하늘색	1개					
16	물 호스	10m	1개					

257mm×364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위반장소	보관일시	보관장소	취급자성명	비고
1	장갑	검은색	한켠레	서부동 955-39	2026. 6. 25. ~ 2027. 1. 26.	서부동 647 대로콘크리트 옆 적치장 (야적장)	동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2	양파망	초록색	1개					
3	분무기	파란색	1개					
4	플라스틱 반찬통	40cm*30cm	1개					
5	루프	50cm	1개					
6	herabuna	파란색 (일본어)	1개					
7	낮	60cm	2개					
8	과도	30cm	1개					
9	스페너	30cm	1개					
10	단망치	초록색	1개					
11	단곡괭이	60cm	1개					
12	장곡괭이	1.5m	1개					
13	단망치	초록색	1개					
14	장망치	1.2m (무진동)	1개					
15	삽	1m	1개					
16	옥 무침 어분	브랜드 (일성)	1개					

257mm×364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위반장소	보관일시	보관장소	취급자성명	비고
1	우비	남색	1개	서부동 955-39	2026. 6. 25. ~ 2027. 1. 26.	서부동 647 대로콘크리트 옆 적치장 (야적장)	동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2	그늘막	브랜드 (소나무) 검은색	1개					
3	캠프 크레프터	빨간색 (네파)	1개					
4	칼대기	흰색	1개					
5	칼봉	500ml	5개					
6	흰색 플라 스틱	초록색 뚜껑	1개					
7	흰색 플라 스틱	핑크색 뚜껑	2개					
8	흰색 플라 스틱	흰색	1개					
9	그물망	초록색	1개					
10	비닐롤	투명색	1개					
11								
12								
13								
14								
15								
16								

257mm×364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치도 및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700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 고 명: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9. ~ 7. 23.(14일간)
3. 공고방법: 공보, 게시판,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공고대상 및 내용

구분	대상지	대집행 대상	대집행 내용	대집행 예정일
국유재산	서부동 955-39	울타리, 적치물, 경작물 등 무단점유 시설물 일체	무단점유 시설물, 적치물, 불법경작물 등의 제거 및 원상복구	2026. 7. 28.(화) ~ 8. 7.(금) ※ 기상여건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화정동 929			
공유재산	화정동 15			
	화정동 17			
	화정동 232-1			
	화정동 산28			

6.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내 자진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공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라. 본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6.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052-209-3632)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00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6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623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유물(가설건축물, 경작물 등)을 2026년 7월 8일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 하도록 계고서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 7. 28.(화) 10:00 ~ 2026. 8. 7.(금) 해가 지기 전까지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이정륜	대집행 후 징수 (소요비용 추후 부과)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서부동 955-39(천)

위치도



현 장 사 진



□ 화정동 929(천), 화정동 15(답), 화정동 17(답), 화정동 232-1(도), 화정동 산28(임)

위 치 도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705호

공유수면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하였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 고 명: 공유수면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9. ~ 7. 24.(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제21조(원상회복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 사전통지)
5. 공고대상 및 내용

위 치	행위자	불법점용물	처분내용	대집행 방법	관련법
동부동 164-22	미상	불법경작 및 가설건축물	불법 점용물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철거	공유수면법
동부동 645					
화정동 산 30-1					
화정동 산 53-1					
화정동 944-2					
주전동 755					

6. 기타사항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유수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자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함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052-209-3635)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05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4월 15일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13842(2026. 4. 15.), 17737(2026. 5. 11.),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고 제2026-568호, 제2026-576호로 원상 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지정된 최종기한(26. 6. 19.)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년 7월 27일 ~ 8월 7일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이정륜	대집행 후 징수 (소요비용 추후 부과)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05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건설과

직위(직급): 건설행정팀장

성 명: 이 정 룬

위 사람은 귀하의 공유수면 구역 내 불법점용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할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공유수면 무단점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동부동 167-22, 동부동 645

위치도



현장사진



□ 화정동 산 30-1, 화정동 산 53-1, 화정동 944-2

위치도



현장사진



□ 주전동 755

위치도



현장사진

